

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서

[첨부 3]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귀중

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 조의 2 에 따라 고객님의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와 체결한 아래의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차량번호	
고객명	
생년월일	
주소	
연락처	
대출금액	
대출 실행일	
대출 계약 철회 기간	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 일

년 월 일 성명(계약자) (인/서명)

※ 대출계약 철회를 원하실 경우, 고객센터(1577-2320) 또는 홈페이지(<https://benzfs.com>)를 통해 신청하거나, 해당 양식 작성 후 이메일(mbfsk-cs@daimler.com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대출계약 철회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4 조의 2 에 의해 계약서류제공일, 계약체결일(계약 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 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※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※ 청약 철회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본인은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